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5월 24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2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6월 4일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철

나. 제안이유

- 궁도장(금오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하여 궁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증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무명: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관리 운영

○ 시설개요

- 시설명: 구미시 궁도장(금오정)
- 소재지: 구미시 진평동 704번지(동락공원 내)
- 규모: 부지 6,611㎡, 연면적 604.8㎡ (한옥형태, 지상2층)
- 주요시설: 사대 28, 과녁 4관(145m)
- 층별시설

구분	주요시설	비고
지상	1층	행사장, 사무실, 공방
	2층	전시실, 심판대기실, 회의실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구미도시공사)
- 소요예산: 221,834천원(2024년)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세입	-	58,790	58,790	58,790	58,790	235,160
	소계(a)	-	58,790	58,790	58,790	58,790	235,160
세출	노무비	149,862	154,358	158,989	163,758	168,671	795,638
	경비	40,391	41,603	42,851	44,137	45,461	214,443
	일반관리비	11,415	11,757	12,110	12,473	12,847	60,602
	부가세	20,166	20,771	21,395	22,036	22,697	107,065
	소계(b)	221,834	228,489	235,345	242,404	249,676	1,177,748
합계(a-b)		△221,834	△169,699	△176,555	△183,614	△190,886	△942,588

- ※ 구미시 궁도장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산출 결과('23. 9.)
- ※ 물가반영률 연 3%적용

3. 참고사항

- 궁도장(금오정) 사진대지
- 위탁비용 산출내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5
 - 「지방공기업법」 제1조 ~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 제22조의2

공도장(금오정) 사진대지

□ 위치도



□ 조감도



위탁비용 산출내역

(단위 : 원/년)

구 분		공도장(금오정)	비 고
인 건 비	소 계	149,861,576	
경 비	보 험 료	15,902,539	
	복 리 후 생 비	1,015,953	
	수 도 광 열 비	2,062,095	
	전 력 비	9,207,170	
	수 리 수 선 비	6,286,693	
	소 모 품 비	1,890,530	
	지 급 수 수 료	4,026,361	
	소 계	40,391,341	
순 운영 비		190,252,917	
일 반 관 리 비 (6 %)		11,415,175	
운 영 비 합 계		201,668,092	
부 가 가 치 세 (1 0 %)		20,166,809	
연 간 운 영 비 용		221,834,900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동의안은

- 궁도장(금오정)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구미도시공사 공공위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 검토 결과,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동령 제19조의5에 따라 구미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으므로, 구미시 궁도장을 구미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5년간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구미도시공사로 위탁을 추진하기 전, 상시 근무자와 시설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해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궁도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 (3인)을 채용하고, 필요시 구미도시공사 기존 인력을 활용한 총괄관리 방향 모색 필요

6.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